

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(이하 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체육관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-5번지에 둔다

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 제1항·제2항·제3항, 제9조 제2항·제5항, 제11조 제2항, 제12조 중 “복지관”을 “복지시설”로 한다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『별표』

복 지 시 설 이 용 료

구 분	기 준	이 용 료		비고
		장 애 인 생활보호대상자	일 반 장 애 인	
물리치료 (언어·심리)	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	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심신 장애자 복지법시행령 제20조 에 준함		
직업훈련	1인 1개월	무 료	20,000원	
수 영 장	1회 2시간	“	자체운영규정	
	월 회 원	“	에 의한 실비	
기 타		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실비		

신 .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(이하“복지관”이라한다)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 (이하“복지시설”이라한다)을 설치하고 이의 ----- -----</p>
<p>제2조(위치)①(생 략) ②(신 설)</p>	<p>제2조(위치)①(현행과 같음) ②채육관은 청주시 사천동623-5번지</p>
<p>제3조(정의) (생 략)</p>	<p>제3조(정의)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업무 및 기능)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(생 략) 4. (생 략) 5. (생 략) 6. (생 략) 7.(생 략) 8.(생 략) 9.(생 략) 	<p>제4조(업무 및 기능)복지시설의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(현행과 같음) 2.(현행과 같음) 3.(현행과 같음) 4.(현행과 같음) 5.(현행과 같음) 6.(현행과 같음) 7.(현행과 같음) 8.(현행과 같음) 9.(현행과 같음)
<p>제5조(이용대상)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으로 하되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.</p>	<p>제5조(이용대상)복지시설의 ----- -----</p>
<p>제6조(이용료)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 는자는 “별표”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. 다만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할수 있다</p>	<p>제6조(이용료)복지시설의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7조(위탁운영)①도지사는 복지관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운영 시킬수 있다.</p>	<p>제7조(위탁운영)①도지사는 복지시설 ----- ----- -----</p>

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	행	개	정	안					
<p>②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자(이하"수탁자"라 한다)는 도지사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, 도지사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</p> <p>③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,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②복지시설을----- ----- -----</p> <p>③복지시설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8조(위탁기간)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, 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위탁기간)(현행과 같음)</p>	<p>제9조 (수탁자의 임무)①(생 략)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. ③(생 략) ④(생 략) ⑤수탁자가 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중축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준공과 동시 총칭 복도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(생 략)</p>	<p>제9조(수탁자의 임무)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복지시설의----- ----- ③(현행과 같음) ④(현행과 같음) ⑤----복지시설----- ----- ----- ⑥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0조(감독)①(생 략) ②(생 략)</p>	<p>제10조(감독)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1조(위탁의 취소) ①(생 략) 1.(생 략) 2.(생 략) 3.(생 략) 4.(생 략) 5.(생 략)</p>	<p>제11조(위탁의 취소)①(현행과 같음) 1.(현행과 같음) 2.(현행과 같음) 3.(현행과 같음) 4.(현행과 같음) 5.(현행과 같음)</p>

신 .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이 취소 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등은 모두 충청북도에 귀속된다.</p>	<p>②----- -----복지시설----- -----</p>
<p>제12조(자체운영)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<p>제12조(자체운영)-----복지시설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3조(시행규칙) (생 략)</p>	<p>제13조(시행규칙)(현행과 같음)</p>
<p>「별표」</p>	<p>「별표」</p>

『별표』

복 지 관 이 용 료

구 분	기 준	이 용 료		비고
		생활보호대상자	일 반	
물리치료 (언어·심리)	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	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심신 장애자 복지법시행령 제20조 에 준함		
직업훈련	1인 1개월	무 료	20,000원	
기 타		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실비		

『별표』

복 지 시 설 이 용 료

구 분	기 준	이 용 료		비고
		장 애 인 생활보호대상자	일 반 장 애 인	
물리치료 (언어·심리)	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	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심신 장애자 복지법시행령 제20조 에 준함		
직업훈련	1인 1개월	무 료	20,000원	
수 영 장	1회 2시간	“	자체운영규정 에 의한 실비	
	월 회 원	“		
기 타		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실비		